

국가건축정책의 우선적 과제

Prior subject of National Architecture Policy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2010년 6월30일 대한건축사협회 대강당에서 '기회의 한국건축'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글은 그날 필자가 발표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토론회의 결론으로 주장한 아래 내용들은 국가건축정책에 바로 적용되어야 한다. 그것은 우리 건축인들 모두가 원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또한 건축발전을 통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1. 국가건축정책의 시행을 위한 원론적 사안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다음의 내용들은 국가가 우선적으로 심사숙고해야 할 분야들이다.

1) 행정조직 개편의 필요성이다. 많은 이들이 건축국, 건축청의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방의 행정조직은 아예 건축과, 건축팀 마저 없애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울러 건축관련 기본 통계자료를 위하여 통계청이나 국토해양부에 통계과 또는 국이 신설되어야 한다. 2) 민간전문가 활용을 극대화해야 한다. 특히 최고의 건축전문가인 건축사의 적극적인 활용을 기대해 본다. 3) 국가적인 건축인력과 업무실적관리 System은 건축정책인안, 교육 등을 위하여 바로 갖춰야 한다. 이런 정보는 국민에 대한 의무이다. 4) 올바른 건축인식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은 절대적이다. 건축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꿈을 국민에게 심어 주어야 한다.

2. 시급한 제도개선 사안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건축사 보수 및 대가기준은 민간의 경우 20년 전의 수준이다. 공공기관이 원하는 납품내용은 세계적 수준이지만 대가는 선진국의 절반 남짓하다. 현재의 건축사업계는 전멸 일보직전이다. 이는 국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노력하는 건축사마저도 생존이 어려운 개인의 잘못이 아니다. 최소한 생존의 걱정은 없도록 국가가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야 한다. 2) 설계 발주제도는 건축생존과 발전의 근간이다. 일괄입찰(던키), 현상공모, BTL 방식, 입찰 등으로 나누어 지는데, 창작을 하는 건축설계의 본질은 싼 것을 뽑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작품을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연구되고 제안된 내용으로 빨리 제도개선이 되어야 한다. 3) 현재의 PQ제도는 발주자의 편의와 실적 있는 기존 업체를 위한 제도이므로 없애거나 대폭 수정되어야 한다. 신진 건축사들에게 공평한 경쟁기회를 주어야 설계의 경쟁력이 생긴다. 4) 전국의 건축물이 700만동 가까이 있는데 건축물 유지관리제도가 없다. 정기적인 점검과 책임 있는 건축물 관리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 5) 건축 인허가제도 중 각종 위원회가 던지는 무소불위의 권한행사는 없어져야 한다. 건축신고제도는 절차적 편의와 국민의 경제적 부담경감이라는 목표와 역주행하고 있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제도가 무엇인지 고민하여 탈바꿈되어야 한다. 6) 공공건축사제도를 도입하여 비전문가 공무원으로 인한 업무적 비효율은 없애야 한다. 건축 최고 전문가인 건축사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일은 너무도 많다. 7) 과다 배출되고 있는 5년제 건축대학과 전문대학원의 정원은 1,000명 미만으로 조절되어야 한다. 건축전문인력의 교육과 수급은 정부가 지원하고 조정해야 한다. 8) 친환경건축 설계와 시공을 위한 전문시방서, 표준상세도는 하루빨리 연구되고 제작, 보급되어야 한다. 국가정책으로 추진되는 친환경건축은 최신재료와 기법을 추구하기에 선진건축의 대표로 분류되므로 세계경쟁력을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시급한 과제다. 9) 마지막으로 소규모 건축물의 공사를 위한 소형 건설업체도 도입되어 소형건축물을 책임 있는 자격자가 시공해야 한다. 건축설계는 물론 시공도 전문가가 해야 한다. 또한 행위자가 책임져야 한다. 건축의 전문성을 망치는 비전문가에게 주는 특혜는 국민들에게 잘못된 건축의식만 고취시킬 뿐이다.



전영철 / Jeon, Young-cheol, KIRA
대한건축사협회 상근이사

명품 건축물을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건축의 품격을 높여야 한다. 또한 건축을 통하여 국가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축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와 상당한 보수대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건축의 르네상스를 위하여 건축계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잘못된 제도개선을 위한 정부의 의지는 절대적인 필요조건이다. ■